



목 차

1. 증거금 관리업무 준비	1
2. 증거금 대상 증권 및 증거금인정비율	1
3. 증거금 가액 산정	2
4. 증거금 설정 절차	4
5. 증거금 대체	6
6. 증거금 납부 불이행시 제재	6
7. 증거금의 해지	6
8. 증거금의 처분	7
9. 증거금 설정에 따른 수수료	7
〈별첨1〉 증거금 설정 예시	8
〈별첨2〉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명세서	10
〈별첨3〉 eSAFE 시스템을 통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증거금관리업무 세부절차	11
〈별첨4〉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대체 신청서	15

1 증거금 관리업무 준비

- 낙찰기관은 최초 가치평가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의 「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」 수행을 위한 준비 완료 (예탁계좌 개설, 공인인증서 발급 등)

2 증거금 대상 증권 및 증거금 인정비율

- 증거금 대상은 국채, 정부보증채,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되, 증거금증권의 상환일이 환매일 후에 도래하는 것이어야 함

- 다만, 이러한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「공개시장운영규정」 제4조 및 「공개시장운영세칙」 제9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또는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」 제2조에 따른 당좌예금*을 인정

* 증거금으로 제공된 당좌예금은 「한국은행법」 제4장 제2절에 따른 지급준비금에서 제외

- 증거금 대상 증권 그룹별로 증거금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

그룹별 증거금 인정비율

구분	종류	증거금인정비율 (%)
제1그룹	국채, 통화안정증권, 정부보증채, 한국은행 당좌예금	100
제2그룹	「공개시장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*	97

주 : 1) 발행기관의 신용도, 채권시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그룹별로 차등 적용

3 증거금 가액 산정

□ 최초 가치평가일(매주 화요일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RP대상 외화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후, 기준증거금의 2%를 초과하는 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낙찰기관은 가치평가일 익영업일 12:00 이전까지 평가차손액 상당의 원화증거금을 납입

○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 = (기준증거금* - 환매조건부매입 외화증권 시장가격 평가액**) × 가치평가일 미달러화 매매기준율***

* 기준증거금 = \sum (당초 환매일까지 보유시 외화채권 환매가 × 증거금률(105%))

** 전영업일 미국 동부 오후 4시 기준 블룸버그 가격(BVAL, Bid 가격)

*** 서울외국환중개社가 고시하는 환율

□ $\frac{\text{평가차손 원화환산액}}{\text{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}} \times 100 > 2\%$

⇒ 평가차손액의 원화환산액 상당의 원화증거금 납입(필요증거금가액)

< 원화 증거금 설정 예시 >

∴ 증거금 평가금액 ≥ 필요증거금가액이 되도록 증거금설정

* 필요증거금가액 : 평가차손액의 원화환산액

** 증거금평가금액 : 가치평가일의 한국예탁결제원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거금 대상증권의 시장가격 × 증거금 인정비율(100% 또는 97%)

□ $\frac{\text{평가차손 원화환산액}}{\text{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}} \times 100 \leq 2\%$

⇒ 원화증거금 납입면제

○ 당행의 평가차손이 (-)일 경우(평가차익)에는 증거금을 제공하지 않음

- 추후 가치평가일(매주 화요일)에는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과 기 납입 원화증거금 시가평가액 간 차액이 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%를 초과한 경우, 가치평가일 익영업일 12:00까지 원화증거금을 추가 납입

□
$$\frac{\text{평가차손 원화환산액} - \text{기납입 원화증거금의 시가평가액}}{\text{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}} \times 100 > 2\%$$

⇒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과 기존 원화증거금 시가평가액 간 차액에 상당하는 원화증거금을 추가 징구

< 원화증거금설정 예시 >

∴ (기존+추가)증거금 평가금액 ≥ 필요증거금가액이 되도록 증거금설정

* 필요증거금가액 : 평가차손액의 원화환산액

** 증거금평가금액 : 가치평가일의 한국예탁결제원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거금 대상증권의 시장가격 × 증거금인정비율(100% 또는 97%)

□
$$\frac{\text{평가차손 원화환산액} - \text{기납입 원화증거금의 시가평가액}}{\text{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}} \times 100 \leq 2\%$$

⇒ 추가 원화증거금 징구를 면제

※ 별첨1 “증거금 설정 예시” 참조

- 원화증거금의 시가평가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거금 대상증권의 시장가격에 그룹별 증거금인정비율을 곱한 값으로 함

4 증거금 설정 절차

- 낙찰기관은 원화증거금 납입 필요시 가치평가일에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 이상을 한국은행(외환회계팀)을 담보권자로 설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앞 최초 증거금증권을 납입

계좌번호 : 1210-0005-01

계좌명칭 : 한국은행(외환회계팀) 자기분

업무구분 :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

- 증거금으로 제공할 증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가치평가일 10:00까지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회계팀 앞으로 <별첨 2> 경쟁입찰방식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 명세서를 e-mail 혹은 팩스로 제출
- 한국은행은 낙찰기관이 납입한 증거금증권의 가치 및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거금 질권설정 신청 등을 승인
- MBS 채권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에서 시장가격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타 채권과 분리하여 관리
- 낙찰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e-SAFE 시스템의 유통등록-질권설정(말소)청구 메뉴에서 증거금으로 제공할 MBS 수량만큼 질권 설정

계좌번호 : 1210-0005-01

계좌명칭 : 한국은행(외환회계팀) 자기분

업무구분 : 유통등록-질권설정

- 종목/청구수량 입력 후 저장 ⇒ 별도 승인절차 없이 질권설정 완료

- 필요증거금가액 중 MBS 질권설정분을 차감한 금액은 장외파생 메뉴에서 MBS 이외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통해 충당

- MBS 시장가격은 한국은행의 채권시장정보시스템(BOMIS)에서 조회되는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, BOMIS에서 조회되지 않는 채권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(KOFIA bond)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이용
 - ※ BOMIS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MBS는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적격증거금으로 인정되지 않음
 - 당행이 적용할 MBS 증거금평가액 등은 결제일 오전 금융기관에 유선을 통해 안내할 예정
 - 매주 화요일(가치평가일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평가차손과 기납입 원화증거금의 시가평가액*을 비교하여 추가 증거금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추가 증거금을 설정
 - * MBS와 여타 채권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증거금평가액으로 산정
 - **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납부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
 - 매 가치평가일에 해당 주 신규 RP매입 거래를 제외한 기존 거래의 기준증거금과 이로부터 산출한 평가차손 및 기납입 원화증거금의 시장가격을 평가하고 익영업일까지 추가 증거금납입, 증거금 교체 등 증거금가액 유지
 - MBS를 추가 증거금으로 제공할 경우 최초 증거금납입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
 - 납입 시한까지 증거금이 미납되었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낙찰기관 앞 통보
- ※ 별첨3 “eSAFE 시스템을 통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 세부절차” 참조

5 증거금 대체

- 증거금 설정자(낙찰기관)의 필요시 한국은행 외환회계팀 앞으로 증거금 대체 신청 가능
 - 신청 당일 증거금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증거금을 납입
 - 해당 기관은 <별첨 4> 경쟁입찰방식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, e-SAFE 상 담보 대체를 신청

6 증거금 납부 불이행시 제재

- 낙찰기관이 가치평가에 따른 원화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최초 도래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박탈하고, 2일 연속 미납시(회수기준 연간 3회 미납시) 중도환매 실시
 - 다만,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도환매를 유예할 수 있음

7 증거금의 해지

- 원화증거금 시가평가금액이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을 상회할 경우 낙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 환산액을 상회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증거금에 대한 질권을 해지할 수 있음
 - 평가차손이 없어진 경우(평가차익 발생) 낙찰기관의 증거금반환 요청에 따라 동 증거금에 설정된 질권을 전액 해지

- (중도)환매일에 낙찰기관이 한국은행에 환매금액을 지급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환매일의 익영업일에 원화 증거금에 대한 질권을 해지

8 증거금의 처분

- 낙찰기관의 환매불이행 이후 거래종료 유예일까지도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아, 환매불이행이 확정된 경우 기존 증거금증권의 소유권을 한국은행 앞으로 이전

9 증거금 설정에 따른 수수료

- 증거금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 및 낙찰기관이 각각 부담

<별첨 1>

증거금 설정 예시

증거금가액	비 고
<p>□ 2020. 9. 22일(화) 최초 가치평가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증거금 : 외화채권 환매가 합계(예: 1억달러) x 증거금률 (105%) = 1.05억달러 - 외화채권 시가평가액 : 2020.9.21일(월) 오후 4시(EST) 기준 블룸버그 가격(BVAL, Bid 가격) (예: 1억달러) - 적용 환율 : 2020.9.22일(화) 서울외국환중개사 고시 매매기준율 (예: 1,200원) - 평가차손 원화 환산액 : 60억원 = (기준증거금-외화채권 시가평가액) × 환율 = (1.05억-1억) × 1,200원 = 60억원 > 기준증거금 × 환율 × 2% = 25.2억원 <p>→ 평가차손 원화환산액이 기준증거금의 2%를 초과하므로 원화증거금 납입 (필요증거금가액 = 평가차손 원화환산액)</p>	
<p>< 최초증거금설정 ></p> <p>□ 2020.9.22일(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증거금가액(평가차손 원화환산액) 이상을 증거금으로 설정하되, 증거금인정비율을 감안하여 납입 <p><예시> (그룹 I 증거금으로 납입) 필요증거금가액 ÷ 100%인 60억원 이상 (그룹 II 증거금으로 납입) 필요증거금가액 ÷ 97%인 61.9억원 이상 (그룹 I, 그룹 II 각각 50% 증거금납입시) 그룹 I 30억원 이상, 그룹 II 30.9억원 이상</p>	<p><화> 신청자료입력 -담보관리기간: 2020.9.22 ~ 2099.12.31</p> <p>-설정자기본담보금액 (=필요증거금가액) : 60억원</p>

증거금가액	비 고
-------	-----

< 추후 가치평가: 매주 화요일 >

- 적용 환율 : 2020.9.29(화) 서울외국환중개사 고시 매매기준율 (예:1,100원)
- 기납입 원화증거금 시가평가액: 62억원으로 가정
- 2020.9.28(월) 기준 환매조건부매입 외화채권 시가평가액이
 - 1) 0.98억달러인 경우, 2) 0.97억달러인 경우, 3) 1.02억달러인 경우,
 - 4) 1.06억달러인 경우 각각 추가 납입 필요금액은 아래와 같음

평가차손 원화환산액(A)	기납입(B) 원화증거금 시가평가액	기납입 원화증거금 초과(A-B)	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%	추가 납입 필요 금액
1) $\$(1.05-0.98) \times 1,100\text{W} = 77\text{억원}$	62억원	77-62 =15억원	\$1억 x 105% x 2% x 1,100W =23.1억원	0, 면제
2) $\$(1.05-0.97) \times 1,100\text{W} = 88\text{억원}$		88-62 =26억원		26억원 추가납입
3) $\$(1.05-1.02) \times 1,100\text{W} = 33\text{억원}$		33-62 =-29억원		0, 29억원 해지가능
4) $\$(1.05-1.06) \times 1,100\text{W} = -11\text{억원}$		-		0, 62억원 해지가능

□ 2020.9.29일(화)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경우 (2)

- 가치평가일 평가차손 원화환산액과 기납입 증거금 시가평가액의 차이가 면제 기준인 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%를 초과하는 경우, 동 차액 이상을 증거금으로 추가 납입
- 2)의 경우 최소 추가증거금액 : 88억원-62억원 = 26억원
(그룹 I 증거금으로 납입) 26억원 ÷ 100%인 26억원 이상
(그룹 II 증거금으로 납입) 26억원 ÷ 97%인 26.8억원 이상

<화> 조건변경 및 증거금추가설정

-설정자기본담보금액
(=필요증거금가액)
: 88억원

-증거금 추가설정액
: 최소 26억원

□ 2020.9.29일(화) 추가 증거금이 불필요한 경우 (1, 3, 4)

- 1) 평가차손 원화환산액이 77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, 기납입 증거금 초과분이 15억원으로 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%에 미달하므로 추가납입을 면제
- 3) 평가차손 원화환산액이 33억원으로 감소하였고, 기납입 증거금이 62억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29억원은 인출 가능
- 4) 평가차익이 발생하여 원화증거금 납입이 불필요해지므로, 기납입 증거금인 62억원까지 인출 가능

<화> 조건변경

-설정자기본담보금액
(=필요증거금가액)
1) 변경하지 않음
3) 33억원(29억원 해지가능)
4) 0원(62억원 해지가능)

<별첨 3>

eSAFE 시스템을 통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 세부절차

* 낙찰기관은 최초 가치평가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(1577-6600)에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증거금 관리 업무를 위한 준비를 완료

□ 최초 증거금 설정 (최초가치평가일)

○ 낙찰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 eSAFE시스템*에 아래의 항목을 입력하고, 한국은행은 이를 승인

* eSAFE 시스템 로그인 → 장외파생 → 개시종결 → 개시 → 거래개시 신청(담보설정자)

○ 만기일이 다른 거래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신청

◎ 개시거래신청 주요 입력내용

- 참가자 계좌 : 입력
- 상대방 계좌 : 1210-0005-01 한국은행(외환회계팀) 자기분
- 담보관리기간 : 기본값(당일) ~ 2099.12.31
(환매시 이행확인 후 환매일의 익영업일에 질권 설정 해지 예정)
- 수수료 구분 : 쌍방
- 적 용 통 화 : 원 (환율구분/환율 : 선택안함)
- 외화증권증거금 : 미사용
- 증거금권자 파산시 증거금말소 : 미동의
- 일일정산방식 : 필요담보액방식
- 세부정산방식 : 필요담보
- 위험노출액 : 0원

- 설정자 기본담보금액 : 필요증거금가액 = 평가차손 원화환산액
= (기준증거금 - 환매조건부매입 외화채권 시가평가액)
x 가치평가당일 미달러 매매기준율
- 담보권자 기본담보금액 : 0원
- 신용한도금액 : 0원
- 최소인도금액 : 0원
- 필요담보금액 : 설정자 기본담보금액 입력시 자동입력
- 단수처리기준금액 : 선택 안함

◎ 담보POOL

- 담보풀 선택 : 납입 예정인 증거금증권 종류를 추가

◎ 증권담보신청내역

- 행추가 → 종목코드 입력 → 예탁잔량(자동생성) → 신청수량 입력
→ 담보인정비율 100% 또는 97% 입력 → 평가금액(자동생성)

◎ 현금담보/예금담보신청내역 : 선택 안함

◎ 담보합계 : 자동생성

- 담보인정비율을 반영한 평가금액이 필요담보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

⇒ 증권담보신청내역에 해당증권을 선택 후 화면 하단 입력 클릭

□ 최초 설정 이후 (가치평가 및 추가 증거금설정/해지시)

- 매주 가치평가일(화요일,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)마다 평가차손을 계산하고 필요증거금가액을 재산출하여 추가증거금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
 - 가치평가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의 경우 낙찰기관은 매주 가치평가일 관련사항(필요증거금액 등)을 한국은행 외환회계팀에 유선(02-759-5846) 및 이메일(bokfxbt@bok.or.kr)로 통보
 - 낙찰기관이 추가증거금 납입/증거금해지 필요시, 신청일에 eSAFE 시스템에서 조건변경*을 신청하고, 한국은행이 이를 승인해야 증거금 증권의 추가 납부**/해지*** 가능함
 - * eSAFE시스템 → 장외파생 → 거래관리 → 조건변경 → 거래조건변경신청
 - ** eSAFE시스템 → 장외파생 → 담보관리 → 담보설정/말소 → 담보추가 설정
 - *** eSAFE시스템 → 장외파생 → 담보관리 → 담보설정/말소 → 담보해지 신청
 - 증거금대체가 필요할 경우 증거금변경 내역이 포함된 증거금명세서를 한국은행 외환회계팀 앞으로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송부
 - 한국은행의 구두승인 후 eSAFE상에서 담보대체*를 신청
 - * eSAFE시스템 → 장외파생 → 담보관리 → 담보교환/대체 → 담보대체 신청
- ※ 담보대체 : 담보설정자(금융기관)의 필요에 의해 기제공 증거금을 회수하고 대체증거금을 제공
- 담보교환 : 담보권자(한국은행)의 요청에 의해 증거금설정자가 기제공 증거금을 해지하고 대체증거금을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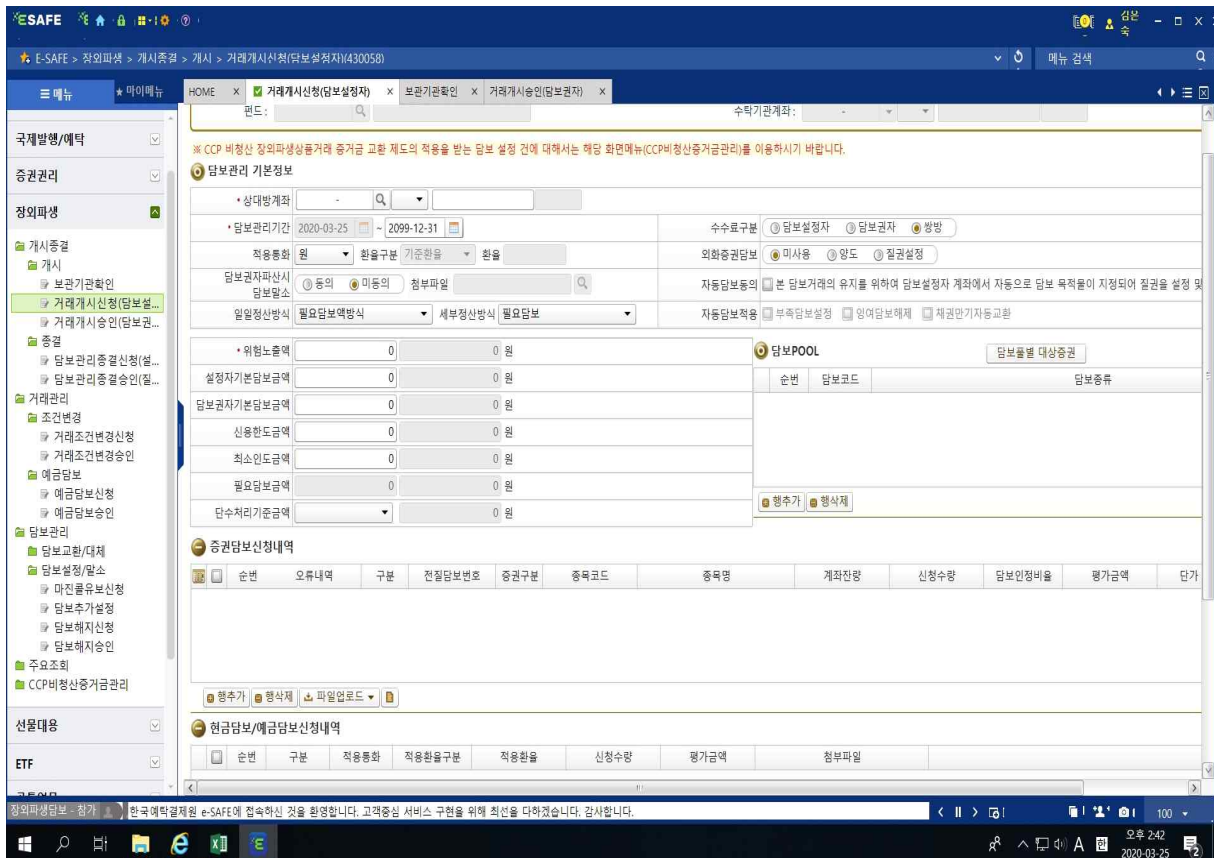
◎ 거래조건변경신청 주요 입력내용

- 명목거래대금 : 0
- 위험노출금액 : 0
- 설정자 기본담보금액 : 필요증거금가액 = 평가차손 원화환산액
= (기준증거금 - 환매조건부매입 외화채권 시가평가액)
x 가치평가당일 미달러 매매기준율*
- * 가치평가일 오전에 서울외국환중개사 홈페이지에 고시되는 환율
- 담보권자 기본담보금액 : 0
- 신용한도금액 : 0
- 최소인도금액 : 0
- 단수처리기준금액 : 선택 안함

※ 거래조건변경 승인 후에 마진콜 여부 확인 가능

→ 추가 증거금 납입 필요시 유선상 통보 → 증거금증권의 추가 납부가 가능

<참고 : eSAFE 거래개시신청 화면>



<별첨 4>

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대체 신청서
(년 월 일)

수신 : 한국은행 국제국장(외환회계팀)

발신 : ()은행 ()부장

○○차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거래 증거금을 아래와 같이 대체 신청합니다.

○ 낙찰금액 : (백만달러)

<변경전>

증권구분	종목코드	종목명	증거금예정금액 (백만원)	비 고

<변경후>

증권구분	종목코드	종목명	증거금예정금액 (백만원)	비 고

※ 국제국 외환회계팀 e-mail bokfxbt@bok.or.kr

전화 ☎ 02-759-5846

팩스 ☎ 02-759-5820, 02-750-6571

* 담당자 성함,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.